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 買受人の 契約違反에 대한 賣渡人の 救濟

A Study on the Seller's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徐廷逸*

- I. 序說
- II. 國際物品賣買契約違反의 一般的 形態
- III. 賣渡人の 履行請求權
 - 1. 救濟方法
 - 2. 協約에 의한 代金의 支給強制
 - 3. 代金請求訴訟
- IV. 附加의 最終履行期間을 정한 賣渡人の 通知
 - 1. 契約解除의 根據로서 通知
 - 2. 通知에서 要請하고 있는 履行의 受領義務
- V. 賣渡人の 契約解除權
 - 1. 契約解除事由
 - 2. 解除時期의 制限
- VI. 賣渡人の 物品明細確定權
- VII. 結論

* 大韓商事仲裁院 專門委員

I. 序 說

國際物品賣買의 고유한 특징은 賣渡人과 買受인이 각기 다른 나라에 居住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賣渡人과 買受인이 각기 相異한 나라에 있는 國際去來契約에서의 物品賣買는 國內의 物品賣買에 비해 外國法適用의 可能性, 國際的 決濟에 관한 問題, 相異한 法域間에서의 紛爭解決의 方法, 強制執行에 있어서의 問題 등이 發生할 수 있다. 이러한 國際物品賣買에 있어서의 紛爭은 대부분 契約違反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賣買契約 當事者가 契約內容에 따른 성실한 履行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契約當事者間에 복잡한 問題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國際物品賣買契約의 履行過程에 있어서 當事者一方의 契約違反에 따른 救濟方法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當事者間의 賣買契約을 規律할 實質的인 統一法의 採擇과 그 解釋原則에 있어서 統一法의 國際的 性格과 適用上의 統一 및 國際去來에 있어서 信義誠實의 遵守를 促進할 必要性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980년의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UN協約(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해 規律되는 事項에 관련되는 問題로서, 契約違反과 그 救濟에 따른 當事者의 契約關係에 適用되는 準據法의 決定問題와 그 適用範圍의 問題는, 協約上 明白하게 정하여지자 아니한 것은 協約이 기하는 一般原則에 의하고, 만일 그러한 原則이 없을 때에는 國際私法의 原則에 의해 適用되는 法에 따라 解決하여야 한다.

協約上 賣渡人の 契約違反에 대하여 買受인이 취할 수 있는 救濟方法은 買受人の 履行請求權, 代金減額權, 契約解除權, 損害賠償請求權이며, 買受人の 契約違反에 대한 賣渡人の 救濟方法은 契約上의 義務履行請求權, 契約解除權, 損害賠償請求權이다.

協約은 一方當事者가 協約 또는 國際物品賣買契約을 違反하였을 경우, 相對方이 어떻게 救濟되고 保護될 수 있는가의 問題를 다름에 있어 大陸法系와 英美法系의 法原理를 적절히妥協, 調節한 內容의 權利救濟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協約上의 權利救濟에 관한 规定은 各 契約違反 形態에 따라 個別의으로 相異한 權利救濟方法을 세분하여 규정하기보다는 各 當事者 별로 大別해서 賣渡人の 契約違反을 根據로 한 權利救濟規律(協約 제45조 내지 제52조: 이하 協約의 경우에는 條文만을 표시함)과 買受人の 契約違反을 根據로 한 權利救濟規律(제61조 내지 제65조)을 별도로 둔 다음, 補充的

으로 兩當事者에게 모두 適用될 追加規定 즉 履行의 中止와 履行期前 契約違反(제71조 내지 제72조), 損害賠償 및 免責(제74조 내지 제77조, 제79조 및 제80조) 그리고 契約의 解除(제81조 내지 제84조) 등의 规定을 따로 두고 있다.

II. 國際物品賣買契約違反의 一般的 形態

傳統的으로 우리 民法을 비롯한 大陸法系에서는 본래 契約에서 約束되었던 給付의 内容을 그대로 實現하도록 하는 것이 債權者에게 有利하며, 契約의 本來 趣旨에도 부합된다는 理由로 現實的 強制履行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고, 例外的으로 損害賠償에 의한 權利救濟方式을 採擇하고 있는 반면에, 英美法系에서는 契約違反의 경우 約束된 債務에 대체되는 手段으로서의 補償의 救濟인 金錢의 賠償을 명하는 損害賠償을 原則으로 하여 例外的으로 現實的 強制履行을 인정하고 있다. 賣渡人은 買受人와 契約違反에 대하여 對物救濟 이외에 對人救濟로서 代金請求와 損害賠償請求가 있다. 對物救濟의 行使는 賣渡人에게 對人救濟에 대한 追加保證을 提供한다.

協約(제61조-제65조)은 買受人와 契約違反에 대한 賣渡人の 救濟手段을 規定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國際賣買를 完遂하는데 協力を 필요로 한다는 事實에 대응하고 있다.¹⁾

各當事者는 相對方에게 相應하는 措置를 취해야 한다. 協約 제54조는 買受人이 취할 事前措置로 信用狀의 發行準備와 賣渡人에 대한 代金送金의 許可申請과 같이 代金의 適時支給에 필요한 措置의 重要性을 반영하고 있다.²⁾

1) 이에 대한 詳細한 研究文獻으로는 Leif Sevon,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Sale of Goods」,(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Inc.1986), p.204; Muna Ndul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1980 And The Hague Uniform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Q., 1989, pp.2-4; Fritz Enderlein,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33(New York, London, Rome, Oceana, P. Sarcovic & P. Volken eds.,1985), pp.137-140.

2) Jellena Vilus,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33(New York, London, Rome, Oceana, P.

代金支給을 可能하게 하는데 必要한 措置들은 買受人の 賣買代金 支給義務의 一部를 이룬다.³⁾ 賣渡人은 買受人の 義務履行을 위하여 合理的인 期間만큼의 附加期間을 定할 수 있다. 이것은 買受人の 附加期間通知의 당연한 結果로 賣渡人の 權限이다.⁴⁾

買受人이 賣渡人の 通知에서 정한 附加期間內에 代金支給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賣渡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⁵⁾ 따라서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代金支給을 위해 菲요한 여러 措置 중 하나를 취하기 위한 最終의 附加期間을 정하는 적절한 通知를 하였다면(제54조), 賣渡人에 의한 契約解除는 買受인이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本質的인 違反이 된다는 立證에 根據할 필요가 없다.⁶⁾

그 외에 代金支給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措置들 중 하나를 취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契約違反이 된다(제53조, 제54조). 그리고 賣渡人이 이러한 違反이 本質의 인 것임을 立證할 수 있다면 賣渡人은 追加期間을 정한 附加期間의 通知를 먼저 할 필요가 없이 契約解除를 宣言할 수 있다(제25조, 제64조 제1항(a)).

그러나 相對方이 義務의 중요부분을 履行하지 아니할 것이 明確해진 경우에 當事者가 義務履行을 停止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 이러한 許容은 相對方이 아직 契約違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⁷⁾ 따라서 履行停止의 事由는 주의깊게 制限되어야 한다.⁸⁾

Sarcovic & P. Volken eds., 1985), pp.241-245; Arther G. Murphey, Jr., Consequential Damage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Legacy of Hadley, 23 Geo Wash.J.Int'l L & Econ., 1989, pp.416-417.

3) J. Honnald,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2, pp.469-503.

4) B.Nicholas,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Am.J.Comp.L., 1979, p.232.

5) Leif Sevon, Obligation of The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 Sale of Goods, p.224.

6) Jan Hellner, "The Vienna Convention and Standard Form Contract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p.352-353; T.C.Hartley, The Law Relating to International Sale Goods, A Study of the Uniform Law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The Hague Conventions 1964) and the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79, pp.2-7

7) Jelena Vilus,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241; Graham Corney, Obligation and Remedi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23 Queensland Law Society J., 1993, p 42

8) Leif Sevon,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233; Amy H.Kastely, The Right to Reqire

買受人の 履行能力의 重大한 缺陷(a serious deficiency)은 경우에 따라 賣渡人에게 자신의 義務履行을 停止할 수 있게 한다.⁹⁾ 그러나 買受人이 제54조에서 要求하는措置 중 하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買受人은 契約違反이 되며, 이 경우 賣渡人은 履行停止規定을 援用할 필요가 없이 契約違反에 대해 規定되어 있는 救濟手段들, 즉 附加期間-解除의 救濟方法(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b)) 그리고 本質的인 違反을 理由로 한 解除를 할 수 있다(제25조, 제64조 제1항(a)).

代金을 정하지 않은 契約(open-price contracts)에서 當事者들이 대금을 결정함이 없이 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지 與否에 관해 上충되는 見解가 있다.

契約締結의 提議에는 物品을 表示하고,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그 數量과 代金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하기 위한 條項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確定의인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 自體만 보면 請約에서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代金을 정하지 않거나, 代金을 決定하기 위한 條項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同 請約은 承諾과 契約成立을 위하여 충분하게 確定의이지 않음을 보여준다.¹⁰⁾ 그러나 이러한 解釋基準은 拒否되어야 한다. 契約에서 그 代金을 明示的이나 默示的으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정하기 위한 條項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契約이 有效하게 成立되었음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에, 協約 제55조는 當事者들이 默示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代金決定方法을 規定하고 있다.¹¹⁾ 當事者들이 代金을 정하지 않고서는 契約을 절대 締結할 수 없다는 主張은 당연히 拒否되지만, 代金을 정하지 않은 契約에 대한 反對立場은 現實의인 認識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當事者들은一般的으로 代金에 대한 아무런 合意없이 그들의 將來의 行動을 拘束할 意思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認識은 協約 제14조와 제55조의 適用에 있어서 重要하다. 協約 제14조에 의하면, 提案이 承諾이 있는 경우에는 拘束된다고 하는 請約者의 意思가 表示되어 있지 않는한 그러한 提案은 請約이 아니다. 協約 제55조는 契約이 有效하게 成立된 경우에만 적용된다.¹²⁾

Perfomance in International Sales: Towards an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63:607 Wash.L.Rev., 1988, pp.622-25.

9) Farnsworth, Damages and Specific Relief, 27 Amer.J.Comp.L., 1979, pp.247, 249.

10) H. E. Hartnell, Rousing the Sleeping Dog: The Validity Exception to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8 The Yale Jounal International Law, 1993, pp.45-50.

11)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and Taxation Publishers, 1982, p.182.

買受人の 契約違反에 따른 賣渡人の 對物救濟方法은 본질적으로 物品의 占有 또는 所有權을 回復할 수 있는 物品自體에 관련된 것으로서 英美法에 따르면 物品의 留置權, 運送停止權, 再賣却權이 있으며, 對人救濟方法으로는 代金支給請求의 訴 또는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있다.

貿易契約上 買受인이 正當한 事由 없이 자신의 本質的 義務인 物品引受 및 代金支給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경우, 物品의 所有權이 移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하여 救濟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法律的 救濟方法은 때로 被害當事者の 利益保護의 측면에서 볼 때 賣渡人에게 不滿足스러운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¹³⁾ 約定된 物品을 引渡한 후 買受인이 支給不能狀態에 빠질 경우, 賣渡人은 法律的 救濟方法을 選擇하기 보다는 商慣習의 으로 賣渡人에게 부여되고 있는 物品自體에 관한 權利를 行使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다. 代金을 支給받지 못한 賣渡人은 代金支給에 관한 一種의 擔保로서 作用하고 있는 物品을 留置 또는 再賣却하여 자신의 辦濟에 充當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對人救濟方法에 있어서도 賣渡人은 어떠한 경우에 代金支給請求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지 問題로 된다. 英國物品賣買法의 一般原則을 보면 所有權이 移轉되었을 때는 代金支給請求權이 있고, 所有權이 移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가 可能하다(SGA 제49조 제1항).

III. 賣渡人の 履行請求權

1. 救濟方法

12) Ziegel, The Remedial Provisions in the Vienna Sales Convention: Some Common Law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4, pp.9-11.

13) Peter Winship,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ternational Sales, 1988, p 1.

14) H. J. Berman/M.Ladd, Risk of Loss or Damage in Documentary Transac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1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988, pp.429-433.

買受人の 代金支給義務가 買受人이 物品을 受領한 後에도 履行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그가 物品을 受領하지 않은 경우에도 代金支給을 強制할 수 있는 救濟手段에 관한 것이다.¹⁵⁾

제62조는 “賣渡人이 買受人에 대하여 代金의 支給과 引渡의 受領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¹⁶⁾ 賣渡人에게 주어진 이러한 救濟手段은 제46조의 賣渡人の 履行을 請求할 수 있는 買受人の 救濟手段과 유사하다. 따라서 제46조에서 論議된 内容과 관련이 있다.¹⁷⁾

그리고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는 賣渡人이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狀況을 規定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賣買契約에 의하여 物品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하고 買受人이 契約의 條件에 따라 代金支給을 不法으로懈怠하거나 拒絕한 때에는, 賣渡人은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賣買契約에 따라 物品의 引渡與否와 關係없이 一定日에 代金을 支給하여야 할 買受人이 不法으로 이를懈怠하거나 拒絕한 때에는 비록 物品의 所有權이 移轉되지 아니하고 物品이 契約에 充當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賣渡人은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에서 規定하고 있는 救濟手段은 當事者間의 明示的 契約에 따라 修正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明示的條件이 普通法上 不法에 該當하거나 確定法律에 矛盾되지 않는 한 제49조의 規定보다 優先의으로 適用하게 된다.¹⁸⁾ 그리고 買受人の 物品을 受領하여 取得한 경우 賣渡人은 合意된 代金을 請求할 수 있음을 明白하다(제62조).

그리고 美國統一商法典은 이 原則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¹⁹⁾ 즉 同法 제

15) Leif Sevon,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218.

16) Henry Gabriel, "Practitioner's Guide to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1994), pp.179-180.

17) Fritz Enderlein,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p.189-190.

18) T.C.Hartley, *The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nd the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repared by UNCITRAL*, Vol II(London 1979), p.7.

19)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The Perspective from Article 2 of the UCC*, 8 J.Law and Comm, 1988, pp.53-56.

2-709조는 賣渡人은 다음과 같은 要件을 갖춘경우에는 買受人에게 代金支給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첫째, 履行期가 到來한 경우에는 買受人이 代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경우 賣渡人은 附隨의인 損害賠償과 함께 代金을 請求할 수 있다.

그리고 物品의 損失危險이 買受人에게 移轉한 後에는 商業的으로 合理的인 期間內 (within a commercially reasonable time)에 滅失 또는 毀損된 受領物品 또는 契約과 一致하는 物品의 代金을 請求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賣渡人이 合理的인 努力を 기울인 후에도 合理的인 價格으로 物品을 轉賣할 수 없거나 모든 상황이 이러한 노력에 아무 效果가 없을 것으로 考慮되는 경우에는 充當된 物品의 代金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代金全額에 대한 訴訟上 請求權에 대한 普通法의 接近方法은 所有權의 移轉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種類物品을 目的으로 하는 典型的인 賣買(契約에서 特定한 特定物이 아님)에 있어서는 所有權法理의 適用은 物品이 船積되기 前에 買受人이 契約履行을 事前에 拒絕하거나 物品의 受領을 拒絕한 경우 代金에 대한 賣渡人の 訴訟上 請求權을 制限하고 있다.²¹⁾

大陸法系의 法理論에서는 協約 제28조와 제46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各自는 相對方의 義務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²²⁾ 그러나 法院은 義務履行을 물리적으로 強制할 수 있으며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는 原則은 實제에 있어 一般原則보다 훨씬 中요한 많은例外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買受人이 賣渡人이 保有하고 있는 物品을 受領拒絶한 때 買受人の 代金支給義務를 強制하는 것은, 買受人の 負擔으로 物품을 再賣却하는 것을 內容으로 할 때이며 差額請求訴訟에 의해 補充되게 된다. 差額請求訴訟은 買受人에게 引渡의 受領과 代金支給을 거의 請求할 수 없다.²³⁾

또한 協約 제75조에 의하면 契約을 解除한 경우 賣渡人은 物品을 轉賣할 수 있고 자신이 입은 기타 追加損害를 포함하여 契約代金과 代替去來의 代金間의 差額을 請求할

20)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pp. 437-439;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p.60; Gabriel,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p.181.

21)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p.58.

22)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p.199.

23) G Corney, Obligations and Remedi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p.48.

수 있다.²⁴⁾ 그리고 이와 類似한 救濟手段으로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代金支給을 請求하기 위한手段으로서가 아닌 賣渡人の 損害를 算定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美國統一商法典 제2-706조에 規定되어 있다.²⁵⁾

2. 協約에 의한 代金의 支給強制

買受人이 物品을 受領하여 取得한 때에는 協約 제62조가 適用되게 된다. 즉 “賣渡人은…買受人에 대하여 代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이 物品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協約의 기타 規定은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引渡를 受領하고 代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는지 與否의 問題에 관계할 수 있다.²⁶⁾

英國法에 起源을 둔 法體系에서는 “特定履行”으로서 買受人으로 부터 代金全額을 請求할 수 있는 訴訟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特定履行”이라는 用語는 일반적으로 傳統的인 衡平法院(courts of equity)이 訂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각종 罰則에 의하여 強制될 수 있는 命令과 類似한 것이다.²⁷⁾

그런데 買受人이 物品을 受領 또는 취득하지 않고 또 物品을 受領하거나 取得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代金全額의 請求는 買受人에게 去來를 完遂하도록 强要하는 것과 같은 機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協約의 立場이다. 賣渡人은 買受人에 대하여 代金의 支給 및 引渡의 受領을 請求할 수 있다는 제62조의 規定은, 買受人은 賣渡人の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는 제46조의 規定에 相應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양자의 救濟手段들은 제28조에 명시된 國內法에의 讓許가 可能하다. 協約의 規定에 의하면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의 履行을 請求할 權利가 있다해도 法廷地의 國內法上 이러한 救濟에 대한 制限이 있는 경우에는 優先하여 適用되게 된다(제28조). 買受人에게 代金支給을

24) Henry Gabriel,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CISG and UCC*, p.178-179.

25) Steven Walt, *For Specific Performance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Vol.26-2, Spring 1991), p.229.

26) 이에 대한 國內文獻으로는 姜二洙, 國際貿易慣習論(서울:三英社, 1993), 268面.

27) E.Bergsten/A.J.Miller, "The Remedy of Reduction of Price", 27 A.J.C.L., 1979, pp.255-56.

28) Amy H. Kastely,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ales*, p.616; Ulen, *The Efficiency of Specific Performance: Toward a Unified Theory of Contract Remedies*, 83 Mich.L.Rev., 1984, pp.341,363.

請求하는 訴訟(제62조)을 통하여 受領을 원하지 않는 買受人에게 物品의 受領을 强制하려고 할 경우 法廷地의 國內法上 이러한 救濟에 대한 制限들이 決定的인 意味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制限規定은 普通法에만 特유한 것은 아니다. 普通法을 따를 것을 主張하는 學者들은 代金請求訴訟을 物品의 引渡를 請求하는 訴訟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제7조). 따라서 제46조와 제62조의 同等한 文言의 중요성은 協約의 構成과 立法沿革을 통하여 確認된다.²⁹⁾

그리고 協約 제28조와 제46조에 대한 論議에서 履行強制를 制限하는 協約의 기타規定을 두고 있다.³⁰⁾ 協約規定 중에서 제85조와 제86조는 物品을 占有하고 있는 賣渡人이 불분명하게 買受人の 危險과 費用으로 物品을 占有하려고 하는 경우에 特別한 관련을 갖는다.³¹⁾ 協約 제85조에 의하면 買受人이 物品引渡의 受領을 遲滯하는 경우에 物品을 占有 또는 支配하는 賣渡人은 物品을 保管하기 위하여 그 狀況에서合理的인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³²⁾ 이러한 事實은 제88조 제2항의 중요한規定을 탄생시켰다.³³⁾ 物品이 滅失 또는 급속히 毀損되기 쉬운 경우 또는 物品의 保管에 不合理的費用을 要하는 경우에 賣渡人은 物品을 賣却하기 위한合理的인 措置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物品이 毀損의 속도가 급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繼續的인 占有는 必然적으로 保管料의 浪費에 의한 費用增大를 隨伴하게 된다.³⁴⁾

그러나 協約 제46조의 論議에서 提示된 理由로 인해 賣渡人은 원하지 않는 買受人에게 物品의 受領을 強要하는 제62조의 包括的인 文言을 그다지 자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³⁵⁾ 그리고 法的 節次에 의해 最終的으로 買受人에게 物品의 受領과 代金

2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onsolidation of Work Done by the Working Group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Suggested Solutions for Unsolved Problems, 1974, U.N. Doc.A/CN.9/W.G./WP.16.

30) Dennis Campbell, Remedies for International Sellers of Goods, p.50.

31) Muna Ndul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1980 and the Hague Uniform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 A Comparative Analysis, p.23; J.Barrignan Marcantonio, "Unifying the Law of Impossibility", 8 Hastings I.C.L.Rev., 1984, p.41.

32) Peter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1986), p.108.

33) Muna Ndul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1980 andk The Hague Uniform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A Comparative Analysis, p.23.

34) Peter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p.109.

支給이 强制될 때까지의 支給強制에는 物品의 占有가 필요하다. 따라서 過重한 保管料와 腐敗 및 滅失의 危險으로 인해 불완전한 救濟手段으로 만든다. 그 理由는 法的 權利가 완전하게 實現된다는 것은 法理論上으로만 可能하기 때문이다. 즉 買受人の 物品受領과 代金支給을 强制하는 訴訟이 最終判決에 도달한 때에 賣渡人은 비로소 拒絶하던 買受人이 破産하였고 자신의 수중에는 단지 부패된 物品이 남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物品을 轉賣함으로써(제75조) 賣渡人이 危險의 크기를 즉시 輕減하는 것을 期待할 수 있고, 損失이 發生한 때에는 물론 賣渡人은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제75조, 제76조, 제78조).

3. 代金請求訴訟

賣買된 物品에 대한 代金請求訴訟은 債務額에 대한 請求로 賣渡人이 特定된 義務의履行이나 特定條件에 대한 反對給付로 買受人이 支給할 契約上 確定된 金額에 대한 請求이다. 英國物品賣買法(1979) 제50조 제1항은 買受人이 物品의 受領과 代金의 支給을 不法으로 懈怠하거나 또는 拒絶한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에 대하여 受領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規定하여 賣渡人の 損害賠償請求訴訟은 買受人の 受領不履行에 대하여 行使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英國物品賣買法은 所有權을 중심으로 그것이 移轉한 경우에는 代金請求權을 그것이 移轉되기 前에는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國際去來에서 所有權의 所在를 紛明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所有權의 所在보다는 去來慣習上 物品의 處分權을 누가 行使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따라 代金請求權과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를 區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美國統一商法典 제2-709조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物品을 수령하였거나 物品이 契約의 內容에 充足되었지만 賣渡人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서도 상당한 價格으로 物品의 再賣買가 不可能하거나 또는 그러한 노력이 무익함을 충분히 認定할 수 있는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買受人에게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規定³⁵⁾하여 英國物品賣買法의 所有權主義에서 벗어나 去來慣習의 측면을 強調하고 있다.³⁶⁾

35) Ziegel, The Remedial Provisions in the Vienna Sales Convention, pp.35-39.

36) Henry Gabriel,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CISG and UCC, p.188.

그러나 處分權의 소재에 따라 代金請求權의 與否를 決定하는 것은 所有權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賣渡人の 代金請求訴訟은 買受人の 代金支給이 解怠했거나 또는 拒絕한 바와 같이 不法의이어야 한다. 그리고 賣買契約의 條件에 代金支給時期를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不法의 意味는 契約 條件으로부터 推定하여야 한다.³⁸⁾ 따라서 契約에서 買受人에게 일정한 信用期間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期間이 終了되기까지 請求訴訟을 할 權利가 없다. 代金請求訴訟의 要件은 다음과 같다.

가. 所有權을 買受人에게 移轉했을 때

英國物品賣買法(1979) 제49조 제1항은 “賣買契約에 의하여 賣渡人이 物品의 所有權을 買受人에게 移轉하고 買受인이 契約條件에 따라 代金支給을 不法으로 解怠했거나 拒絕할 경우에는 賣渡人은 代金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所有權은 物品이 買受人에게 引渡되기 前에, 買受인이 物品을 受領하기 前에도 買受人에게 移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買受인이 物品受領을 不法의으로 拒絕할 경우에는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 제1항에 따라 賣渡人은 代金請求를 할 수 있다.³⁹⁾

또한 物品引渡가 이루어졌다는 事實 그 자체가 반드시 代金請求訴訟의 要件이 되지는 못하며 賣渡人이 賣買契約을 終了했다면 代金請求訴訟을 할 수 없다.

FOB契約에서 所有權은 船積 前에는 移轉하지 않기 때문에 賣渡人은 物品을 本船에 積載한 後에야 代金請求訴訟을 할 수 있다.⁴⁰⁾ 그렇지만 船積 後에도 賣渡人이 處分權을 留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處分權을 抛棄했을 때만 代金請求訴訟을 할 수 있다.

買受인이 不法의으로 FOB 契約의 履行을 拒絕한 後에 賣渡人이 物品을 船積한다면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White and

37)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p.85.

38) E.A.Farnsworth, Damages and Specific Relief, 27 Am.J.Comp.L., 1979, pp.247-248.

39) A.G.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Sweet & Maxwell Limited, 1987, pp.1242-43.

40) Green v. Sichel(1860) 7C.B.(N.S.)747; Henderson and Glass v. Radmore & Co. (1922) 10 L1.L.K.727.

Carter(Councils) Ltd. v. McGregor 사건에서 法院은 다른 當事者의 契約履行을 拒絕한 後 그의 協助 없이 자신의 義務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한 당사자는 자신의履行을 위해 支給하기로 合意한 金額에 대하여는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判示했다.⁴¹⁾ 그러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않을 경우에는 所有權移轉을妨害하는 買受人의 不法的인 行動이 있어도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 제1항에서의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FOB 契約에서 買受人이 契約義務를 違反하고 有效한 船舶을 指定하지 못했을 경우 賣渡人の 救濟는 代金請求訴訟이 아니라, 受領不履行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이다. 왜냐하면 物品의 所有權이 物品이 本船에 實際로 引渡되기 까지는 移轉될 수 없기 때문이다.⁴²⁾

마찬가지로 CIF 契約에서 買受人은 賣渡人이 書類를 提示할 때 이를 受領하기를 不法의으로 拒絕할 경우에는 賣渡人の 유일한 救濟는 損害賠償請求訴訟이다.

왜냐하면 物品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³⁾

나. 一定日에 代金支給

代金請求訴訟의 다른 要件은 契約上에 物品의 引渡나 所有權의 移轉과 關係없이 一定한 期日에 代金을 支給하도록 规定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 제2항은 “賣買契約에 따라 物品의 引渡與否에 關係없이 一定日에 代金을 支給하여야 할 買受人이 不法으로 이를 解怠하거나 拒絕할 때에는 物品의 所有權이 移轉되지 아니하고 物品이 契約에 充足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賣渡人은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规定하고 있다.

이 條項은 Dunlop v. Grote 사건에 根據를 둔 것으로 契約書에는 철강의 引渡가 4월 30일 以前에 要求되지 않는다 해도 代金은 4월 30일에 支給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賣渡人은 그날까지 實제로 物品은 引渡하지 않았지만 引渡할 准備가 되어 있는 철강一部分의 代金에 대하여는 請求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있다고 判示하였다.⁴⁴⁾

41) (962) A.C.413

42) Colley v. Overseas Exporters(1921) 3 K.B. 302.

43) Stein, Forbes & Co. v. County Tailoring Co.(1916) 86 L.J.K.B.448.

44)(1845) 2 Car.& K.153.

Shall-Mex Ltd. v. Elton Cop. Dyeing Co. Ltd 事件에서 위의 제49조 제2항의 '一定日'(a day certain)의 意味를 '未來 또는 不確定한 事件의 發生에 의존하지 않는 契約上의 特定한 時間'이라고 判示하였다.⁴⁵⁾

英國物品賣買法(1979) 제49조 제2항의 '一定日'이란 契約當事者나 제3자의 行動과는 獨立的으로 決定되며 契約에서 미리 確定되는 日字이다. 예를 들어 賣渡人이 物品의 製造過程에서 어느 特定한 段階에 到達했을 때 代金의 一部分을 支給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割賦金은 本條에서 말하는 '一定日 支給'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데 Workman, Clark & Co. Ltd. v. Lloyd Brazileno 事件의 賣渡人이 建造하는 船舶賣買에 관한 契約에서 抗訴院은 本條項이 物品代金의 全額에 대한 請求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期日에 支給되어야 할 割賦金에 대한 請求에도 適用될 수 있다고 判示했다.⁴⁶⁾ 비록 法院에서는 同條가 規定하고 있는 'a day certain'의 文理的인 意味를 檢討하지 않았지만 船舶의 龍骨(keel)이 놓여졌을 때와 같이 船舶建造가 어느 段階에 到達했을 때 支給되어야 할 割賦金에 대하여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判示했다. 만약 本條項이 代金支給日字가 契約의 履行過程에서 確定될 때 適用된다면 物品의 所有權이 아직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않는 경우에 賣渡人으로 하여금 代金의 回復을 認定한 것이다.

그러나 本條項은 英國物品賣買法(1979) 제50조 제1항과 矛盾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理由는 所有權이 移轉되기 前의 通常의in 救濟인 受領不履行에 대한 損害賠償을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物品의 代金이 一定日에 支給된다는 의미는 代金이 物品의 引渡前에 支給되는 것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이 때에는 아직 物品의 引渡가 이루어지기 前이기 때문에 賣渡人이 買受人の 受領不履行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⁷⁾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가 賣渡人이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모든 狀況을 規定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契約條件에 明示 또는 默示의으로 이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있으며, 또한 契約條件으로 代金支給을 위해 確定된 時間이 引渡나 所有權의 移轉과 關聯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45) (1928) 34 Com. Cas. 39.

46) (1908) 1 K. B. 968, 977, 978, 981.

47) A.G.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pp.1130-35.

도同一하다.⁴⁸⁾

따라서 英國物品賣買法 제28조는 “反對의 合意가 없는 한 賣渡人은 代金과 償還으로 物品의 占有를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있어야 하고 買受人은 物品의 占有와 償還으로 代金을 支給할 수 있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契約은 引渡 前에 代金을 支給하며 所有權은 引渡時에만 移轉한다고 規定할 수 있다. 이러한 規定은 代金支給의 請求時나 相當한 期間 内에 支給되어야 한다는 意味를 갖고 있다. 따라서 비록 所有權이 移轉되지 않고 代金支給을 위한 特定日이 없어도 賣渡人은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判示되었다.⁴⁹⁾

英國物品賣買法 제49조 以外의 경우로 賣渡人이 代金請求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條件附 賣買協定(conditional sale agreements)의 形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割賦金이 支給되기까지는 賣渡人이 物品의 所有權을 갖기로 合意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買受人の 割賦金支給의 不履行이나 破産과 같은 事由가 發生하면 全額을 支給하기로 合意한다.⁵⁰⁾

Consumer Credit Act(1974)를 適用하는 ‘消費者 信用協定’(consumer credit agreement)이나 條件附 賣買協定의 경우에도 英國物品賣買法의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이 適用되지는 않지만 賣渡人은 代金全額에 대하여 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¹⁾

IV. 附加의 最終履行期間을 정한 賣渡人の 通知

1. 契約解除의 根據로서 通知

48) Stein Forbes & Co. v. Country Tailoring Co. (1916) 86 L.J.K.B. 448; Colley v. Overseas Exporters(1921) 3 K.B. 302. 310.

49) A.G.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p.1265.

50) McEntire v. Crosseley Bros.Ltd. (1895) A.C. 457; Sandford v. Dairy Supplies Ltd.(1941) N.Z.L.R. 141.

51) A.G.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p.1265.

協約 제63조는 제47조가 買受人에게 履行을 위하여 合理的인 期間만큼의 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救濟手段을 賣渡人에게 주고 있다. 따라서 買受人이 이러한 附加期間 내에 履行을 하지 아니하면 제64조 제1항 (b)는 賣渡人이 買受人の 違反이 根本的인 것임을 立證할 필요없이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고 规定하고 있다.

買受人에 의한 附加期間의 通知는 賣渡人이 物品의 引渡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制限된範圍에서만 契約解除의 根據가 된다.⁵²⁾ 協約제63조의 賣渡人에 의한 附加期間의 通知는 買受인이 정해진 期間內에 代金의 支給 또는 物品의 引渡를 受領할 자신의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64조 제1항(b)에서의 契約解除의 根據가 된다.⁵³⁾ 따라서 通知와 解除라는 救濟方法은 買受人の義務 가운데 가장 重要的한義務에만 適用된다.⁵⁴⁾

즉 物品의 樣式을 特定하는 것(제65조)과 같은 기타의 領域에서 買受人の 不履行은 契約違反이 되기는 하지만 賣渡人은 그 違反이 根本的인 것인 경우에만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제25조, 제64조 제1항(a)). 賣渡人에 의한 附加期間의 通知에서는 相對方이 履行을 위한 附加 및 最終期間을 가진다고 表示한 경우에만 이 通知가 契約解除의 根據로서 役割을 할 수 있다.⁵⁵⁾

2. 通知에서 要請하고 있는 履行의 受領義務

協約 제63조 제1항은 賣渡人이 買受人の義務履行을 위하여 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고 规定한다. 그리고 通知는 제64조 제1항(b)의 通知-解除의 救濟方法에 援用할 수 없는 欠疵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⁵⁶⁾

이와 같이 더 넓은 領域에서는 通知가 제63조 제2항에 规定된 結果, 즉 賣渡人은 자

52) Henry Gabriel, Practitioner's Guide to the CISG and the UCC, p.183.

53) Graham Corney, Obligations and Remedi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p.51.

54) Muna Ndul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1980 and the Hague Uniform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A Comparative Analysis, pp.15-16.

55) P.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pp.84-85; J.S.Ziegel, The Remedial Provisions in the Vienna : Some Common Law Perspective, p.456.

56) Bulow, Consequential Damages and the Duty to Mitigate in New York Maritime Arbitration, Lloyd's Mar. & Com.L.Q., 1984, pp.622, 624.

신이 要請한 履行을 受領할 義務를 진다는 결과를 가져온다(제47조 제2항).

V. 賣渡人の 契約解除權

1. 契約解除事由

賣渡人에 의한 契約解除는 일반적으로 買受人の 代金支給의 遲滯에 根據하고 있다. 賣渡人은 通常의으로 買受인이 代金을 支給할 때까지 物品의 引渡를 遲滯할 수 있다 (제58조 제1항, 제71조). 그러나 解除는 훨씬 더 廣範圍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契約을 解除한 賣渡人은 物品을 引渡할 필요가 없다.

協約 제64조 제1항(제49조는 買受人の 契約解除權을 定義하고 있다)은 賣渡人の 契約解除에 대해 두 가지 事由를 規定하고 있다.⁵⁹⁾ 첫째, 買受人에 의한 本質的인 契約違反 및 둘째, 제63조 제1항에 따라 賣渡人이 정한 附加的인 最終期間內에 買受인이 代金支給 또는 引渡受領을 不履行한 경우의 附加期間의 通知이다.⁶⁰⁾

첫번째 解除事由는 “根本的인 違反”的 定義(제25조)와 관련한 것이다.

그리고 附加期間의 通知에 根據하는 두번째 解除事由에서는 다음의 事項이 특히 強調된다. 附加期間의 通知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通知에서 代金의 支給 또는 物品引渡의 受領이라는 買受人の 基本義務의 履行(제64조 제1항 (b))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解除의 根據가 된다는 것이다.⁶¹⁾

그러나 買受人の 代金支給義務는 代金支給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措置를 包含한다(제54조). 예를 들어 解除와 通知의 救濟方法(제63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 (b))은 買受人이 자신의 信用狀開設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경우에 使用할 수 있다.⁶²⁾

59) Henry Gabriel, Practitioner's Guide to the CISG & the UCC, p.188.

60) Date-Ba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Overview and Selective Commentary, 11 Rev.Ghana L.,1979, pp.50,62

61) Henry Gabriel, The Convention on CIGS and UCC, pp.186-187.

62) Schwartz, The Case for Specific Perfomance, 89 Yale L.J.,1979, pp.296-98.

2. 解除時期의 制限

協約 제64조 제2항은 解除期間을 制限하고 있다.⁶³⁾ 買受人에 의한 과도한 履行遲滯를 禁止하려는 실질적인 考慮가 제49조에서 考察되었고,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는 賣渡人の 遲延된 契約解除에도 適用된다. 그리고 제64조 제2항이 規定한 期間制限은 買受인이 이미 代金을 支給한 경우에만 適用된다.⁶⁴⁾ 買受인이 代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 賣渡人の 契約解除에 대한 期間制限이 缺如된 것은 買受인이 支給을 기다릴 동안에 賣渡人の 어려운 立場을 考慮하지 않으면 變則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일 解除에 관한 除斥期間이 提示되었다면 賣渡人은 그 遲滯가 아직 本質的인 違反이 아니라는 理由로 첫째, 너무 일찍이 또는 그러한 명확한 시점에 이른 후 賣渡人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理由로 둘째, 너무 늦게 解除를 宣言할 危險이 있다. 따라서 제64조 제2항은 被害者인 賣渡人을 이러한 危險에서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⁶⁵⁾

VI. 賣渡人の 物品明細確定權

物品明細確定權이라 함은 契約上 買受인이 物品의 모양, 容量 및 기타 特徵에 대한 明細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買受인이 合意된 期日 또는 賣渡人으로부터 要請을 받은 후 상당한 期間內에 그 明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渡人이 買受人の 要求事項을 考慮하여 스스로 明細를 정할 수 있는 權利이다.

協約 제65조는 買受인이 供給하지 않은 物品에 대한 明細를 規定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權利는, 예를 들어, 賣買目的物이 유리한 狀況에 있을 때, 買受인이 物量을 確保하기 위하여 明細는 後에 정하기로 하고 우선 物品의 賣買契約을 締結하였다가 狀況이 惡化되자 具體的인 明細의 確定을 放置 또는 拒否하여 賣渡人の 物品生產 및 供

63) Henry Gabirel, The Convention on CIGS and UCC, p.187.

64) Note, Trade Usag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 Analysis of the 1964 and 1980 Sales Conventions, 24 Va.J.Int'l L., 1984, p.617-618.

65) Goldstajn, Usages of Trade and Other Autonomous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the UN(1980) Sales Conventi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6, p.55.

66)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p.357.

給을 不可能하게 하는 경우에 그 實效性이 있다.⁶⁷⁾ 제65조는 買受人이 漏落된 明細를 供給하길 拒絕함으로써 자신의 義務로부터 回避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規定이다.⁶⁸⁾ 그리고 제65조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漏落된 明細를 提供하는 것은 損害算定에 대해 契約의 內容이 모호하다는 主張을 制限하고 賣渡人으로 하여금 物品을 轉賣함으로써 損害額을 確定할 수 있게 한다.⁶⁹⁾

賣渡人の 物品明細確定權은 다른 救濟權行使를 妨害하지 않는다. 明細確定義務를 지고 있는 買受인이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그 義務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고 그 義務違反이 契約의 本質的 違反으로 되거나 만일 賣渡人이 일정한 附加期間을 정하여 義務履行을 要求하였으나 買受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으며, 또한 明細確定權을 行使與否에 關係없이 契約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⁷⁰⁾ 그러나 買受人에게 明細確定의 權利는 있어도 義務가 없는 경우에는 賣渡人이 스스로 明細를 確定하는 方法以外의 다른 救濟는 생각할 수 없다.

賣渡人이 物品明細確定權을 行使하려고 하는 경우 明細確定에 대한 約定期日이 있는 때에는 그 期日 經過後 즉시 明細를 確定하여야 하고, 그러한 期日이 없는 때에는 買受人에게 明細確定의 要請을 한 때로부터相當한 期間이 經過한 後 明細를 確定하여야 한다. 賣渡人이 스스로 明細를 정한 경우에는 買受人에게 그 細部事項을 告知하고 또 買受人이 다른 明細를 정할 수 있는 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買受人이 明細確定의 告知를 받은 後 賣渡人在 정한 期間內에 다른 明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賣渡人이 정한 明細에 拘束力이 주어진다(제65조 제2항).

제64조는 契約에서 賣渡人이 在庫로 保有하는 物品 중에서 選擇하기로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物品이 쉽게 轉賣될 수 있는 경우에 買受人の 明細에 따라 物品을 提供하기로 하는 때에 쉽게 適用될 수 있다.⁷¹⁾ 그러나 契約에서 지나치게 特秀한 明細에 따른 物品의 提供을 要求함으로써 그 物品이 轉賣될 수 없고,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더

67) UNCITRAL Yearbook Vol.7(1976), p.125.

68) Henry Gabriel, The Convention on CIGS and UCC, p.125.

69) P.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p.85.

70) J.O.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p.357.

71) Henry Gabriel, The Convention on CIGS and UCC, p.189.

以上 그 物品을 使用할 수 없음을 通知한 때에는 더 어려운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만약 賣渡人이 그 後에 明細를 提供하고 아무 實質의 價值가 없는 物品을 提供할 경우 賣渡人の 損害賠償請求 또는 契約代金全額의 請求는 제77조의 損害輕減原則에抵觸될 수 있다(제77조, UCC 2-71(2)(a)).

VII. 結論

協約은 國際物品賣買契約에 있어서의 實體法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當事者의 규정과 貿易慣行의 우위를 인정하는 當事者自治의 原則을 인정함으로써 實體法統一의 限界를 드러내고 있다. 協約은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세부사항들은 當事者들의 自治에 맡겨두고 있다. 또한 協約은 締約國이 留保條項을 채택하여 協約의 一部規定의 適用을 排除할 수도 있게 하여 國內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남겨두고 있다.

協約이나 慣習의 效力 등에 관하여 이 協約에 明示되지 않은 것은 이를 모두 國際私法의 原則에 맡기는立法方式이 택하여지기 때문에 協約만이 國際去來法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買受人은 契約의 內容에 따라서, 즉 當事者 사이의 具體的 合意와 協約의 附隨的 規定에 의해서 賣買代金을 支給하고 物品을 受領하여야 한다(제53조). 제54조에서 제59조까지는 當事者가 달리 約定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賣買代金支給의 細部事項(代金支給場所, 辨濟時期, 賣買代金未約定 등)을 規律하고 있다.

특히 제55조는 賣買價格에 대한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契約締結時에一般的으로 비슷한 사정 아래의 同一한 營業部門에서 賣買되는 同一한 物品에 정하여진 價格을 目的으로 合意한 것으로 認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契約上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賣買代金은 物品 및 이에 必要한 書類의 引渡와 償還으로 支給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反面에 賣渡人도 代金支給에 대해서 物品을 引渡하여야 한다. 物品의 受領을 위해서 買受人이 引受에 대한 義務를 負擔할 뿐만 아니라, 賣渡人이 供給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合理的으로 買受人에게서 期

待되는 모든 行爲를 하여야 한다(제60조).

買受人の 物品受領義務는 賣渡人이 物品引渡에 필요한 行動을 完了하였음에도 買受人이 이를 引受하지 아니하면 비록 代金을 支給하지 않았거나, 支給期日이 到來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로 인한 契約違反責任을 負擔해야 한다.

우리 民法의 경우도 學說上 債權法을 支配하는 信義測으로 보나, 債務履行을 債權者와 債務者의 協同行爲로 보아야 할 것 등을 理由로 一般理論으로 債權者의 引受義務를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며, 또한 賣買契約에 있어서 去來의 信用을 保護하기 위하여 賣渡人에게 不適合擔保責任을 認定하는 것과 對應하여 妥當하다고 본다.

買受人에 의한 契約違反의 경우에 있어서, 賣渡人은 履行請求權 및 履行 또는 貨物履行과 關係없이 請求할 수 있는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진다. 代金未支給 혹은 物品不受領에 기한 契約解除는 단지 이 契約違反이 本質的인 경우에만 認定된다. 그러나 兩者의 契約違反의 경우 賣渡人은 催告期間을 設定하여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b). 賣渡人の 解除權은 또한 買受人이 契約解除를 하기 前에 支給을 하거나 이미 支給한 경우에 있어서는 制限이 된다. 契約上 어느 一方當事者の 契約違反으로 야기되는 가장 核心的인 問題는 그러한 契約違反에 대한 被害當事者の 法的 救濟方法에 관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 A.G.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Sweet & Maxwell Limited.
- Amy H. Kastely,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ales,
- Arther G. Murphey, Jr., Consequential Damage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Legacy of Hadley, 23 Geo.Wash.J.Int'l L & Econ., 1989, .
- B.Nicholas,"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Am.J.Comp.L.,1979, .
- Bulow, Consequential Damages and the Duty to Mitigate in New York Date-Ba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repared by
- E.A.Farnsworth, Damages and Specific Relief, 27 Am.J.Comp.L., 1979,
- E.Bergsten/A.J.Miller, "The Remedy of Reduction of Price", 27 A.J.C.L., Farnsworth, Damages and Specific Relief, 27 Amer.J.Comp.L.,1979, .
-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 Fritz Enderlein,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33(New York,London,Rome,Oceana, P. Sarcovic & P. Volken eds.,1985), .
- Fritz Enderlein,"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under the UN
- Graham Corney, Obligations and Remedi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 Henry Gabriel, Practitioner's Guide to the CISG and the UCC,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Suggested Solutions for Unsolved Problems,
- J.Barrignan Marcantonio, "Unifying the Law of Impossibility", 8 Hastings J. Honnald,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 Nations Convention, 1982.
-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 Jellena Vilus,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33(New York, London, Rome, Oceana, P. Sarcovic & P. Volken eds.,1985),
-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 A Comparative Analysis, p.23:
- Leif Sevon, Obligation of The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 Sale of Goods, .
- Leif Sevon,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Leif Sevon,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ernational Sale of Goods」,(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Inc.1986), :
- Muna Ndul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1980 And The Hague Uniform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Q., 1989.
- Nations Convention, pp. 437-439;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p.616; Ulen, The Efficiency of Specific Performance: Toward a Unified Theory
- P.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p.85.
- Peter Winship,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ternational Sales, 1988,
- Stein Forbes & Co. v. Country Tailoring Co. (1916) 86 L.J.K.B. 448;
- Colley v. Overseas Exporters(1921) 3 K.B.
- Steven Walt, For Specific Performance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Vol.26~2, Spring 1991).
- T.C.Hartley, The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nd the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Manzsche Verlags und
- Ziegel, The Remedial Provisions in the Vienna Sales Convention,